

광주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5433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지훈, 조준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김용표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8.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14,400,5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00,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D은 주식회사 E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9. 6.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원고는 2021. 4. 21.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신용카드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61458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4. 19. ‘D은 원고에게 14,619,652원 및 그중 10,786,084원에 대하여 2022.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부부였던 D과 피고는 2019. 8.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F 주식회사에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D은 2019. 8. 14.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8. 16.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D과 피고는 2019. 10. 15.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E는 2020. 4. 14.경 피고에게 ‘2020. 4. 21.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E가 2020. 4. 14.경 피고에게 ‘2020. 4. 21.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는 2021. 4. 21.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D은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무 발생 이후인 2019. 8. 14.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채권액 14,400,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D은 아무런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에게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D과 피고가 공동으로 형상한 재산 332,909,375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710,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77,090,626원) 중 1/2에 해당하는 166,454,687원 중 원고의 채권액 상당액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9.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56,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채무자인 D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아버지 G가 2019. 1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D의 계좌로 126,000,000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 ② G가 2019. 8. 5.경 D의 채권자 H에게 85,000,000원가량을 대위변제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 2개월 만에 D과 피고는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당시 협의이혼신고서에는 ‘재산분할 당시 양육비를 고려하였으므로, 양육자인 피고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채무자인 D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공제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5) 그런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8. 14.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77,090,625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710,000,000원으로서 D 소유 지분의 가액은 355,0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의 지분은 그 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부담하고 있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양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와 D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9. 10. 15.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당시 양육비를 고려하였으므로, 양육자인 피고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협의이혼 신고서에 기재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시가 7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77,090,625원을 인수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아버지 G의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재산분할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해림

별지